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418호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김포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김포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. 조례의 목적·정의에 관한 사항에 사회복지분야로 확대 추가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다. 센터 설치·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사회복지분야로 확대 추가함 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그 밖에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어린이를 포함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.
- 최근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 제공과 영양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사회복지분야로 확대하여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개선과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.